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관 의 장
람	



제1670호 2026. 5. 28(목)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고 시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21
- 2026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변경가격)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3
- 도로명주소 고시 24

안	○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정기)되오니 공보게재 의되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동구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동구소식 → 고시/공고 → 동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 동구

편집 : 기획예산실(☎ 209-3047, 행정 3047)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544호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1.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정의, 책무규정 등 상위법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중복 기재조항 삭제(안 제2조~제4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전반)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4. 근거법규: [붙임 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및 제22조

[붙임 1]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구”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구”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제7조 1항에 따른 구”를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를 “사회로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무관이 된다”를 “주무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를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3호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등”으로, “그 시행”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비하고 운영을 하도록”을 “정비·운영하도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탄소흡수원등”을 “탄소흡수원 등”으로 한다.

제18조 중 “부족 및 수질악화”를 “부족, 수질악화 및”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 ----- ----- 위임된 ----- ----- ----- ----- -----. <삭 제> <삭 제>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주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제7조 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제7조제1항에 따른 ----- 기본계획 -----.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사회로의 -----
-----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원-----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생략)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

----- 사람 -----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
----- 주무관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

-----.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

1.·2. (현행과 같음)

3. 기본계획 등----- 시행-

행에 관한 사항	-----
4. <u>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u> 에 관한 사항	4. <u>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u>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u>적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삭 제>
7. <u>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u> <u>한 사항</u>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 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 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 히 <u>정비하고 운행을 하도록</u> 노력해 야 한다.	제1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 ----- ----- ----- ----- -- <u>정비·운행하도록</u>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생 략)	제16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현 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u>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u> <u>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u> 을 위한 사 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 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u>탄소흡수원 등</u>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	제18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

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 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 족 및 <u>수질악화</u> 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리) ----- ----- 부 <u>족, 수질악화 및</u> ----- ----- ----- -----.
제21조(협력체계 구축) ①·② (생 략)	제21조(협력체계 구축)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u>기후변</u> <u>화</u>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 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해 노 력해야 한다.	③ ----- ----- <u>기후위</u> <u>기</u> ----- ----- -----.
제23조(포상)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 과 탄소중립 체계 확립을 위해 기 여한 공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 <u>울산광역시 동구 포</u> <u>상 조례</u>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2] 근거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7.>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4. 7.>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5. 11. 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1. 11.]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5. 11. 1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제목개정 2025. 11. 11.]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549호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정의 규정 정비 및 우수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농산물 정의 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1호)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안 제6조제4항)

3. 개정조례안: [붙임 1]

4. 근거법규: [붙임 2]

- 「학교급식법」 제5조, 제8조 및 제9조
-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7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참조: 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 주 소: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교육정책과)
 - 팩 스: 052-209-3209
 - 전자우편: at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052-209-3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 [동구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귀하			

복임 1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 및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산물등”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농수산물
 -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2.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서 우수농산물등의 구입 및 우수농산물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급식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농산물등 사용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교등의 명칭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 현황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4. 급식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국장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관할 교육장 추천 급식업무 관계 공무원, 영양(교)사 또는 조리사

4.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영양사회에서 추천하는 영양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급식지원 학교등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은 우수농산물등을 사용해야 하며,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그 사용내역을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의 적정 사용 여부와 우수농산물등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우수농산물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붙임 2

근거법규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방법)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를 통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에 소요되는 식품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경비 분담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6 - 4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0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28.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피허가자		허가 번호	점용장소	점용목적	변경사항			비고
					구분	당초	변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26,2층 (일산동)	송동준	2026-1	일산동 975-3 번지선	회센터 운영을 위한 해수인입관로 점용사용	기간 연장	2025.3.19. ~ 2026.3.18.	2026.3.19. ~ 2027.3.18.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승인내역

신청인		허가번호	위 치	점용면적 (㎡)	사용목적	점용기간	비고
울산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동구청장 (해양수산 과 장)	2026-02	주전동 800번지 일원 (주전항 ~ 태풍호펜선)	1,063	주전 연안재해 방지시설 보강사업 (파제벽 설치 등)	2026.04.17. ~ 2056.04.16.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 수리 내역

인가 번호	피인가자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사항			공사내역	
	주 소	성 명	허가일 (허가번호)	위치(면적)	점용기간	공사목적	공사기간
2026-02	울산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동구청장 (해양수산 과 장)	2026.04.17. (2026-02)	주전동 800번지 일원 (주전항~ 태풍호펜션) (1,063㎡)	2026.04.17. ~ 2056.04.16. (30년간)	주전 연안재해 방지 시설 보강사업 (파제벽 설치)	2026.05.15. ~ 2026.11.14.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 사항

신청인		허가 번호	위치	점용 면적 (㎡)	사용목적	점용기간		비고
주소	성명					기존	변경	
울산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동구청장 (관광과, 해양수산과)	2026-03	일산동 1000번지선 (일산해수욕장)	38,520	일산해수욕장 관리 운영	2025.05.23. ~ 2026.05.22.	2026.05.23. ~ 2027.05.22.	

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26-43호

2026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변경가격)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변경가격)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

1.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내역 “별책”

- 1)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 2)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 3) 적용지수: 구조, 용도, 위치지수
- 4) 경과년수별 잔가율
- 5) 가감산특례
- 6)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 7)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2.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가격 결정: 내역 “별책”

차량, 에너지공급시설, 기타시설 등

※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변경가격) 시가표준액」 세부 내역은 동구청 세무1과에 비
치하고, 열람 가능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 칙

【시행일】 1. 건축물: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타물건: 신규 및 삭제는 변경고시일, 가격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26 - 4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사유
1	꽃바위로 290	2026-05-28	건물 멸실
2	문재1길 60	2026-05-28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052-209-384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